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연구수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책임자 : 조 상 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 이 경 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조연구원 : 허 창 영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임연구원)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범위	4
3. 연구방법	6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8
5. 기대효과	9
제2장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	11
1. 조례의 법적 성격	13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6
3. 소결	25
제3장 한국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29
1. 들어가며	31
2. 조례제정의 추진/성립 과정	31
3. 지자체별 인권조례 비교	34
4. 정리 및 시사점	70
5. 한국의 각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비교표	72
제4장 일본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79
1. 들어가며	81
2. 지자체별 인권조례 비교	82
3. 정리 및 시사점	99
4. 일본의 각 지자체 인권조례 비교표	101

제5장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	105
1.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방향	107
2.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	108
제6장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	153
■ 참고문헌	163
■ 부 록	165
<부록 1> 한국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167
<부록 2> 일본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205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는 조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접목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기본조례」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접근 방법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실행방향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확보되는 조례’를 말하고¹⁾, 이러한 조례의 제정움직임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조례 제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기본조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이견이 인권기본조례가 생각만큼 확산되지 못하는 장애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첫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둘째 인권증진이 조례의 소관사항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셋째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등이다²⁾.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의회가 주민의 인권증진에 소극적인 경우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연구결과에 따라서 해명 및 해결이 가능한 점은 위의 3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점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권기본조례의 확산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다문화, 외국인, 사회빈곤층 등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별인권조례의 제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인권기본조례를 둘러싼 몇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해명하는 것이 인권보장 및 증진의 제도화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된다.

1)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09년, 416면 참조.

2) 그 이외에도 ‘선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조례제정에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나, 현재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3곳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이 문제는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권기본조례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의 제정당위성을 부여하고, 인권기본조례 제정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입법기술적 고충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지역사회의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권의 제도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표준조례안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표준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간섭 내지 개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판박이 조례 가능성, 주민의 의사수렴 배제 등)에 유의하면서, ‘인권’과 ‘조례’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이라는 큰 틀에서 조화롭게 제도화되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선결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동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사항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주민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목적 하에 제정되는 조례라 하더라도 첫째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둘째 인권이 조례의 소관사항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해명하지 못하면 인권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실제로 이 문제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의 제정 시 시의회 및 집행부의 조례제정의 반대사유

의 근거로 작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2) 현행 인권기본조례의 내용 및 분석(평가)

표준조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조례 및 해외조례를 수집·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국내사례로서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를 수집·분석하여 인권기본조례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 해외사례로는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성숙한 발전과 함께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권을 직접규율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를 수집·분석하여 제정의 역사성, 내용 등에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3) 인권기본조례의 표준안 도출 및 해설

사례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해서 인권기본조례의 기본제정방향을 정립하고,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관한 해설을 시도했다. 다만, 표준조례안의 형식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의원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 대신에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도입하는 판박이 조례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문형으로 표준조례안을 개발을 원칙으로 하지만, 복수의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은 따로 여백으로 남겨 두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4)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촉진 및 활성화 방안

실제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지역 인권사무소, 시민활동가, 시의회 의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그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하고(제정의 경과, 제정안 발의방법, 제정의 어려움 등), 개발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를 평가해 보고 일정한 개정의견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서 아직까지 조례제정 의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동기부여를,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증연구를 병합하여 시행했다.

1) 문헌연구

연구내용 가운데, 인권기본조례 선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로 행정법학의 주요논문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도출했다. 이를 통하여 인권을 조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뒷받침이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인권기본조례의 법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다. 문헌연구로 부족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해결했다.

2) 사례 연구

국내에서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의 분석은 물론, 일본의 인권기본조례(人權尊重町づくり條例)를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유형화를 시도해보고, 그 시사점을 얻는데 주력했다. 또한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는 부락차별문제에서 출발해 왔다는 역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상의 특성도 함께 고찰했다. 게다가 사례연구를 통하여 표준조례안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도 살폈다.

3) 실증연구-인권조례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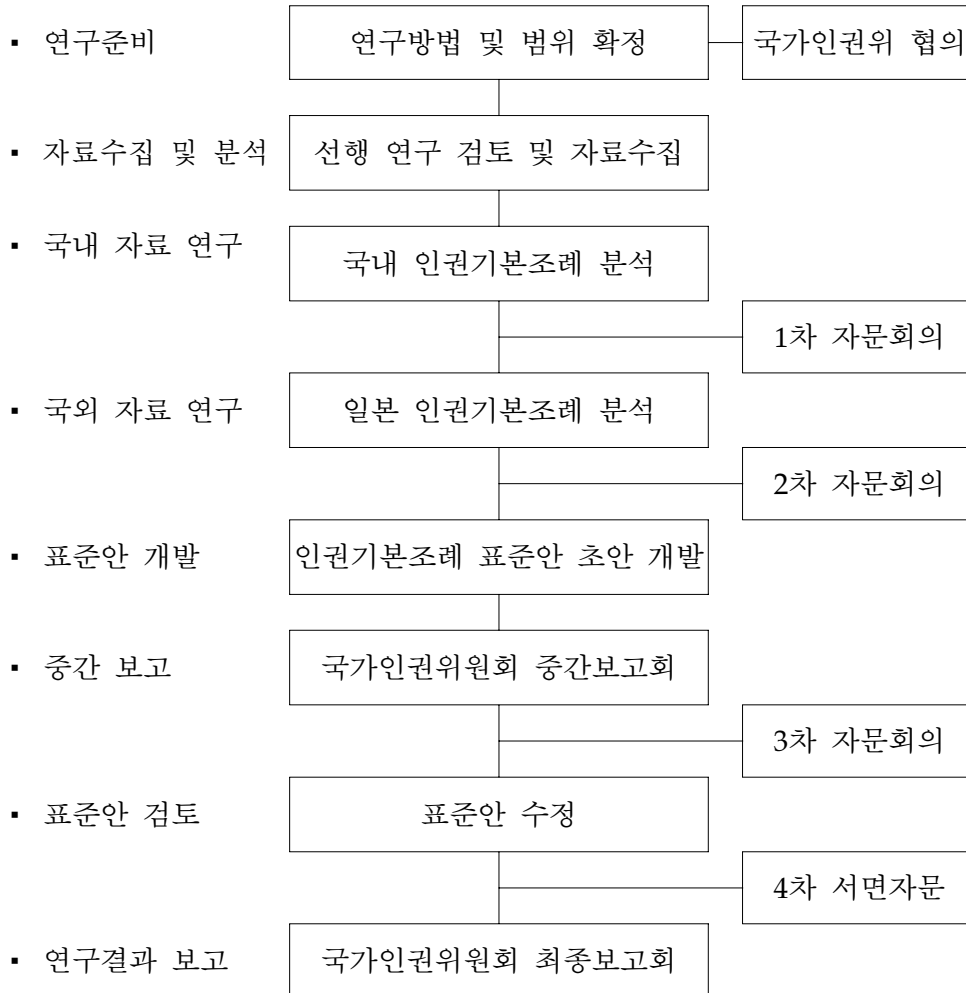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는 모범적인 시민운동의 결과물로서 도출된 것이거나 그 영향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반면에 지역에 따라서는 시민운동의 역량의 한계로 제정에 실패한 지방자치단체도 발견되고 있다.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연구결과 도출된 인권기본조례 표준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실효성을 갖고 추진해 가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와 더불어 실증연구로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조례 전국네트워크’를 자

문위원회로 활용해 각 지역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경험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조례 전국네트워크’의 자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조례의 추진이 해당 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전국적인 논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경험을 공유해 각 지역이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상호 간 협력과 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지역 간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조정해 전국차원의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데 용이하다. 다섯째, 다른 지역에서의 인권조례 제정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권조례 전국네트워크’를 자문위원회로 활용하여 인권조례의 전국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정영선(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준형(전북인권교육센터), 이정강(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이기동(세계인권선언진주협의회), 오문완(울산대 법학과),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이자 제정 또는 추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기본조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문이 가능했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구 기간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회의(2011년 7월 25일)는 전주에서 열렸으며, 광주, 전북, 경남, 울산 등 국내의 각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을 분석·비교해 인권기본조례의 기본 방향 및 내용을 논의했다. 2차 회의(2011년 8월 22일)는 진주에서 열렸으며, 일본의 각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을 분석·비교해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3차 회의(2011년 9월 19일)는 광주에서 열렸으며,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4차는 서면 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보고서 내용 및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았다. 전체 연구과정에서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8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인권기본조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몇 가지 인권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내용 등을 분석한 경상대 김중섭 교수의 “지역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현상과 인식, 겨울호, 2007년)”을 시작으로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조상균 교수의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09년)” 등이 발견되지만,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거나, 지역적·지엽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그 외 인권조례에 관한 관련 연구는

각 개별인권조례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대상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가 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인권기본조례에 관한 연구를 통한 표준조례안의 개발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기대효과

1) 학문적·이론적 발전에 기여

인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고유한 영역 속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해명은 종래 연구의 담론의 확장을 통하여 학문적·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국내외사례연구는 인권조례연구 시 중요한 참고자료 및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의 확대에 기여

기존 법학연구가 문헌의 정리, 법률의 해석 및 판례의 분석을 주 연구방법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의 법학연구는 그 시야를 넓혀 사회학적 분석기법의 도입을 통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표준조례안 개발’ 및 ‘인권조례 전국네트워크 모임 결성을 통한 실증연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 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공허한 담론이 아닌 실증적인 연구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3) 개별인권조례제정의 추진동력으로 작용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표준조례안은 인권기본조례를 말하고, 장애인, 남녀평등, 아동, 노인, 여성, 학생 등의 개별대상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고

3) 류지태 외, 『지방자치 조례·규칙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2008년; 조상균,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인권법평론』 제2호, 2008년; 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부산광역시의 소수자·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2009년 등.

10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자 하는 ‘개별인권조례’와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인권기본조례는 개별인권조례의 제정의 당위성과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충분하다.



제 2 장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

1. 조례의 법적 성격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어느 조직의 자기결정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범정립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치권의 개념에는 자치입법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제22조)와 규칙(제23조)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 삼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조례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하지만, 그 출발점은 조례의 법적 성격과 국법질서와의 조화에 관한 논의라 하겠다.

2) 자치권 본질론에 따른 조례의 법적 성질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조례제정권은 자치권의 일부이므로 조례의 법적 성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되는 자치권의 본질 내지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고유권설과 전래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 유래에 기초한 지방자치권의 본질론은 그 고유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격이나 그 내용도 헌법조항 및 헌법상 기본원리의 해석으로부터 도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권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헌법상의 ‘제도적보장(institutionelle Garantie)설’이 통설이 된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⁴⁾.

4)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년, 1085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6년, 223면; 박윤훈, 『행정법강의(하)』, 2004년, 91면; 천병태, 『지방자치법』, 1996년, 68면.

제도보장 이론은 헌법이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가 입법을 통해서 폐지되거나 제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박탈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이해한다.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가 보장된다는 의미를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제도의 핵심 내지 본질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제도적 보장의 내용을 단순히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로 설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그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하여 주민의 자주적 기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할 것을 보장하는 것’⁵⁾이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역사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 본질 내용에 관한 합의도 찾기 어려운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입법자에게는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광범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제도보장으로부터 적어도 지방자치보장의 이념적 지향을 도출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의 다음 결정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다.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의 수직적 분배는 서로 조화가 요청되고 그 조화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권력분립적·지방분권적인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헌재 1998.4.30 선고 96헌바62 결정)

3) 조례의 법적 성질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이해 차이는 조례를 위임입법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주입법으로 볼 것인가의 견해 대립으로 연결된다.

전자(前者)는 조례제정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한으로 보는 것이다. 헌법

5) 박윤훈, 앞의 책, 92면.

으로부터 법률, 법률의 수권에 의해 명령 및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는 명령과 같이 위임입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에 집중된 단일한 규범정립권한의 체계를 전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일부이고 국가권력은 입법·행정·사법 3권으로 분립되어 있으니 지방자치권도 이 3권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권이란 국가행정권의 일부가 지역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면, 지방자치입법권의 결과인 조례도 행정입법의 일종이라는 설명⁶⁾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후자(後者)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으로 위임입법과는 다른 것이라고 본다. 조례자주입법설은 고유권설의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고유권설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한으로 이해하는 입장 안에서도, 행정권의 일부가 아니라 통치권이 위임된 것으로 본다면 이에 의한 조례제정을 위임입법으로는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할 때 지방자치권을 고유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권이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라 보는 견해 또한 헌법의 지방자치제도보장의 취지에 부합한 해석은 아니라 하겠다. 오늘날 권력분립을 수평적 3권 분립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분립도 포함하는 것이라 이해한다면,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은 단순히 지역적 행정권의 일부만이 아니라 입법권을 포함한 통치권의 수직적 배분이며, 조례제정권도 입법권의 일부라고 이해하여야 한다⁷⁾. 따라서 지방의회도 행정기관의 일종이 아니라 입법기관의 일종이 되며, 조례는 행정입법과는 다른 자치입법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통치원리인 권력분립 및 통제·법치주의·기본권보장 등의 제 원리를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구현시킬 수 있어 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국민(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만 제고된다면 권력분립원리의 지방차원에서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지방분권) 지방의 개성 및 특징과 다양성을 국가전체의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국민의 기본권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헌

6)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년, 294면.

7) 이기우/ 하승수, 『지방자치법』, 2007년, 313면;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1호, 2006년, 395면;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연구』 제19호, 2007년, 4면.

재 1991.3.11, 91헌마21)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러한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례제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이지만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는 자치규범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⁸⁾.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의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안)가 적법·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적지 않다. 이 다툼들은 조례제정절차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내용적으로는 조례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문제와 법령에의 위배 여부인 경우가 많다. 전자는 자치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조례도 국법질서 속의 하나의 규범형식이어서 다른 규범형식과의 조화 내지 효력 서열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2) 조례제정권의 범위 : 사항적 한계

(1) 자치사무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종⁹⁾ 57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8) 문상덕, 앞의 논문, 4면.

9)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주민의 복리증진,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체육·문화 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치사무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즉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구분되는 국가사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는 7종의 사무를 열거 한다¹⁰⁾.

② 구별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위의 구분에 의할 때 어떠한 종류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특히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대부분은 그 유형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개의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 구분할 것이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추30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가 규정하는 사무도 모두 자치사무가 아니고, 다른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이 달라지므로 현행법상 사무구분은 입법정책의 결과라 하겠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¹¹⁾.

③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원리인

-
- 10) 외교·국방·사법·국세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 물가·금융·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이나 고속도로·우편·철도 등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측량단위 등 전국적 기준의 통일을 요하는 사무, 항공관리·기상행정·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이다.
- 11) 오진환, 「조례의 무효와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행정판례연구 III』, 1996년, 324면.

가가 문제된다. 중첩된 관할을 갖게 되는 공동체가 둘 이상 있을 때, 그 관할을 정하는 원칙으로 관할의 우선순위는 개인과의 근접성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과 국가법령의 경합이 문제되는 경우, 보충성의 원칙은 그 규범의 수범자에게 더 가까이 있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의 복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먼 거리에 있는 공동체가 그 사무의 관할을 갖게 된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동체가 개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더 잘 부응할 수 있고, 개인도 가까운 공동체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점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0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까지 확장하여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위임사무의 경우

분권화가 진전될수록 조례 등 자치법규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조례의 현실은 위임사무를 규율하는 ‘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례’가 많다.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은 행정입법예의 위임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제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위임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1995.4.20. 선고 92헌마264, 279결정)는 물론, 대법원 판례(2006.9.8. 선고2004두947판결 등)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

(3)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가능성

①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은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도덕적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그 때문에 인권은 법학적 용례뿐만 아니라 철학적·사회학적 용례로 널리 쓰인다. 인간의 자연권 내지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한 인권 개념이 실정 헌법에 의해 제도화된 것을 기본적 인권 내지 기본권이라 이해

12) 이기우/하승수, 앞의 책, 166면.

13)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1년, 283면.

한다면¹⁴⁾, 양자는 동일하거나 중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포섭되지 않은 인권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인권이 새로이 부각될 수 있다. 오늘날 기본권이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인권들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로는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의 권리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인권은 개별 소수자집단 등에 대한 배려나 시혜 차원이 아닌 사회 전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할 것이다¹⁵⁾.

인권보장조례를 개별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와 포괄적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기본조례로 나눈다면, 현재 전자에 대하여는 위임조례의 형태 또는 자치조례의 형태로 상당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제정되고 있고, 그것도 매우 미흡한 형태이다¹⁶⁾.

② 인권보장은 국가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에서 포괄적 의미의 ‘인권’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자치사무로 열거된 개별적인 사무들은 대부분 인권과 직접 또는 간접적 관련을 맺는 것들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국가라는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권력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인권보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국가만의 임무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공동체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간접의 모든 주체를 총칭하는 것이다¹⁷⁾. 그러므로 인권보호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와 구별되는 국가사무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인권보장은 국가사무임과 동시에 자치사무적 성격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성낙인, 『헌법학』, 2002년, 228면.

15) 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提言’,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2009년, 20면.

16) 안진,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1년, 531면 이하.

17) 우리 헌법제10조 후문보다 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는 독일 기본법제1조1항(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Münch/Kunig, Grundgesetz Kommentar, Art.1, Rdn. 50.

③ 소결

현재 인권기본조례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은 없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판례들(91헌마21 및 96헌바62)에서도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인권을 추가하거나 법령상 권리를 확장하는 내용의 개별적 조례를 합헌·합법으로 판단한 판례들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치국가적 질서와의 관련

(1) 현행법의 구조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헌법 제117조1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적 국법질서 속에서는 다른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규율한계와 효력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과의 관계에서 조례가 법령의 하위 규범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동안 이 단서조항의 위헌 여부가 논란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법률유보원칙의 당연한 결론이라 보지만¹⁸⁾, 자치입법권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제약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¹⁹⁾. 입법론으로서는 이 조항의 삭제가 다수학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판례는 합헌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위 단

18) 홍정선, 앞의 책, 303면.

19) 박윤훈, 앞의 책, 130면 이하; 문상덕, 앞의 논문, 11면.

서조항을 법률유보 원칙을 분명히 한 규정으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거의 모든 경우에 조례제정권은 무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것이며, 결국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중요한 사항은 규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2) 법령의 범위 내

① ‘법령의 범위 내’라는 규정의 의미

자치입법권 행사의 결과인 조례도 넓게 보면 국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국법질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법률과 조례가 내용상 충돌할 때, 법령(법률 및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이 조례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원칙을 보여주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가 그 자체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와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체계적·목적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통설과 판례(대법원 2002.4.26. 선고 2002추23판결 등)가,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²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판례가 법령에서 명령에 대하여 입법권을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지만, 조례에 대한 위임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고 판시²¹⁾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② 조례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규정이 법률우위원칙을 나타내는 근거규정이기는 하

20) 이러한 해석론은 일본에서 먼저 확립된 것이며, 일본의 지방자치법제14조제1항은 이러한 표현으로 개정되었다. 塩野 宏, 『行政法 III』, 2006년, 168면.

21) 대법원 2006.9.8. 선고 2004두947판결(하천법상 부당이득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위임)

지만, 행정권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령)의 근거를 요한다는 의미의 ‘법률유보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²²⁾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판례도 수긍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규정에 따라 조례의 ‘자치’규범성은 크게 저해되고 있다. 즉,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또는 별칙을 창설적으로 담지 못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유보)는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위임조례 외에는 실효적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자치조례는 선언적·훈시적 내용이나 추상적 계획 등을 선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 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²³⁾.

③ 추가조례의 허용성

법령이 이미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과 취지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수준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조례안의 내용이

22) 법치행정의 원리를 그 소극적 측면에서는 행정이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는 ‘법률 우위의 원칙’, 적극적 측면에서는 행정의 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의 유보 원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23) 문상덕, 앞의 논문, 2면.

생활보호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4.25. 선고96추244판결)하였다.

같은 취지는,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선군세 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다른 이유로 조례가 무효라고 본 2007.12.13.2006추52 판결²⁴⁾도 그러한 취지에서는 차이가 없다.

④ 기본권을 확충하는 조례의 허용성

법령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지 아니 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조례도 기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것 또한 판례가 이미 확립한 법리이다. 청주시 정보공개조례에 대한 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았다.

24)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판시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법령에 직접 근거 없이 옴부즈만을 조례로 설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독립성을 갖는 옴부즈맨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실정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민고충을 처리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맨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제도 또는 독립성이 약한 기관에 의한 자체행정 감시·통제제도와는 다른 기능과 효율성을 가지며, 나아가 그 옴부즈맨제도가 위와 같은 다른 감시·통제제도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그 전치조건으로 옴부즈맨에 의한 고충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규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을 옴부즈맨의 관할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이는 주민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다른 불복·규제제도와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불복·규제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기능과 효율성을 가진다”(1997.4.11. 선고 96추138판결)고 본 바 있다²⁵⁾.

(3) 타인의 기본권과의 형량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이익형량의 논리를 조례제정권의 한계 문제에서도 원용하여 조례제정권 확충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25) 이 판결의 평석으로는 김선욱, 「옴부즈만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판례의 문제」, 『행정판례연구』 제4집, 1999년, 481면-501면; 홍준형 「옴부즈만조례의 위법 여부」, 『판례행정법』, 1999년, 1197면-1212면 등.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2헌마264,279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

이러한 논리는 공익과 사익의 형량으로서도 나타난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노점상)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서 재산조회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침해받는 사익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12.26. 선고 2007헌마1422,2008헌마32(병합) 전원재판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3. 소결

1) 인권기본조례의 헌법적 근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²⁶⁾,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헌법상 의무로 주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보장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이와 관련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헌법 제10조의 국가

26) 방승주, 「헌법 제10조」, 『헌법 주석서 I』, 법제처, 2010년, 372면 참조.

의 기본권보장의무와의 관계에서 주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기본조례의 내용

위와 같이 인권기본조례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법체제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성격상 조례에서 다루려는 내용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인권기본조례가 기관(지원조직)설치나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에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기관 간 권한분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인권을 규정하거나, 종래의 기본권 내용을 확장하는 것도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겠다. 셋째, 그러나 선언적 내지 프로그램적인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반화하여 규율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어려울 것이다.

3)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성

현재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하는 판례에 견주어 보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입법공간은 그리 넓지 않으며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도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효과를 과소평가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생활에 밀착한 지역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취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를 창설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주민의 인권보장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한다거나,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드러내 이슈화하고 그 구제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낼 계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²⁷⁾.

또한 모든 권리는 선언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²⁸⁾.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 수단은 재

27) 같은 취지로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0년, 129면.

판이라 할 것이므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중 하나가 재판에서 ‘법’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또한 조례 내지 조례에 근거한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 적절한 제재수단을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형벌적 수단에 비하여는 미약하지만 유효한 실효성확보 수단이다.

28) 이상돈, 『인권법』, 2010년, 머리말 7면.



제 3 장

한국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1. 들어가며

현재까지 앞에서 언급한 인권기본조례의 정의에 적합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부산광역시 남구까지 총 7개 지방자치단체이다(표1 참조).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지역의 제정 역량, 입법 환경 등에 따른 독특한 제정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내용면에서도 일정한 표준유형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상황이 반영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개정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2009.10.27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권 증진조례	2010. 3.25
전라북도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10. 7.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2010.11.22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2010.12.15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10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2011. 5. 6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검색결과 참조.

이하에서는 한국의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정, 조례의 구성체계, 주된 내용, 제정이후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표준안에서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이후의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2. 조례제정의 추진/성립 과정

우선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조례의 수만큼 다양한 제정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개의 지방자

치단체의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의 경우

우선 지자체 최초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광주광역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학계, 광주인권사무소, 시민단체, 의회 등을 주축으로 한 ‘인권조례연구모임²⁹⁾’의 자발적인 인권조례제정운동 과정에서 성립되었다는 점과 조례의 제정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2007.5.15. 제정)」를 전부개정한 형태로 성립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³⁰⁾.

광주광역시의 인권기본조례제정운동에 대해서 광주라는 지역적 특성상 제정이 용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권조례에 대한 상위법의 부재, 인권조례와 종래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2007.5.15. 제정)」와의 차별성 문제, 인권기본조례가 선례가 없다는 문제로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³¹⁾, 결국 이들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 2009년 10월 27일 인권기본조례가 전부개정의 형태로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경상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인권기본조례가 성립된 이후, 전북, 울산, 진주 등 지자체에서 인권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곳은 이들 지자체가 아니라 경상남도였다. 경상남도의 인권기본조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성립된 인권기본조례라고 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조례가 전부 개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인권기본

29)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연구모임은 시·구의회 관계자 3명, 단체활동가 4명, 연구자 6명, 교육계 1명, 정치계 1명, 광주인권사무소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광주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정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09년, 424-426면; 허창영,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운동의 동향과 전망」,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페러다임의 진화-』, 2011년, 30-33면 참조.

31)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조례 제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다만, 제정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과정이 전무했던 관계로 조례가 주민의 인권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까지 조례의 후속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을 보더라도 제정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인권기본조례는 시민단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인권조례 추진 전북본부³³⁾’의 제정제정운동 속에서 도의원 발의형태로 2010년 7월 9일 제정되었다. 동 조례는 집행부발의로 전부개정된 형태로 성립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도의회의 발의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주체가 제정과정이나 제정 후에 집행부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견인하지 못한 관계로 아직까지 인권기본조례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위한(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³⁴⁾.

4) 울산광역시 복구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움직임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시기의 울산광역시의 제정시도는 시민사회와의 공감대의 부족,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한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³⁵⁾. 그러나 이러한 실패의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³⁶⁾과 2007년부터 시작된 전

32) 이기동, 「진주시 인권조례제정 과정과 시사점」,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패러다임의 진화-』, 2011년, 48면 참조.

33) 추진단체 약 22개 단체와 전북지역 교수 25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전준형, 「전라북도 인권조례제정 이후의 동향과 전망」,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패러다임의 진화-』, 2011년, 39면 참조.

34) 전준형, 앞의 발제문, 38-41면 참조.

35)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박영철, 「풀뿌리 인권운동으로서의 조례제정운동의 경험과 과제」, 『지자체 조례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활동가워크숍 자료집』, 2008년, 39-42면 참조.

36)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은 2002년의 조례제정의 실패 후 선뜻 재도전에 나서지 못한 이유로 인권조례운동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과 조례제정의 성패는 결국에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점을 들고 있다. 박영철, 「울산 인권조례운동을 시작하다」,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패

국적 인권기본조례제정 움직임의 성과, 마지막으로 진보성향인사의 의회진출 및 구청장 당선으로 인한 유리한 정치지형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진보정당 소속의 구청장이 당선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2010년 12월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3. 지자체별 인권조례 비교

1) 전체적인 형식 및 체계

① 조례의 명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조례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지금까지 제정된 각 지자체의 조례 가운데, 인권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것은 총 7개 지자체에서 발견된다. 이들 인권기본조례는 공통적으로 조례명에 ‘인권 증진’이라는 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다만,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의 경우 종래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2007.5.15. 제정)」를 전부 개정된 형태로 성립되었던 경위가 있기 때문에 종래의 조례명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조례명을 ‘인권증진’에 한정할 경우, 인권의 개선적 의미로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장되고 있는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인권보호’의 개념이 조례명에 포함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³⁷⁾. 이는 이후의 조례의 목적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러다임의 진화-』, 2011년, 70면.

37) 동일한 취지로 조상균, 앞의 논문, 431면 참조

② 조문 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24개 조문, 부칙	24개 조문, 부칙	21개 조문, 부칙	18개 조문, 부칙	21개 조문, 부칙	20개 조문, 부칙	21개 조문, 부칙

각 지자체 인권기본조례의 조문수는 울산시 북구의 18개 조문을 제외하면 20개에서 24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조례의 구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제3장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 평화도시 시민위원회	장 구분 ×	장 구분 ×	장 구분 ×	장 구분 ×	장 구분 ×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증진 기본계획 제3장 인권증진 위원회 제4장 보칙

각 지자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와 부산시 해운대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장구분이 없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장이 구분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와 부산시 해운대구의 경우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내용, 제3장 위원회 등으로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산시 해운대구의 경우 기타 관련사항을 보칙으로 두고 있다.

2) 각 조례의 공통 영역 비교

① 목적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목적에는 조례의 법률적 근거, 조례의 제정이유, 조례의 규율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례는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³⁸⁾’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기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기본조례의 목적에는 제정이유가 무엇이며, 조례가 규율하는 사항 등을 기술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의 목적조항에 이러한 사항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인권기본조례에 몇 가지 특이한 사항 등이 존재하고 이에 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의 경우 목적조항에 일반적인 사항 외에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조례제정의 역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례의 전문을 두고 있지 않는 사

38) 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판결.

항을 감안하여 목적조항에 포함시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정이유에 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권증진’을 조례제정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경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수영구)’,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해운대구)’를 기술하여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잘 결합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명과 조례목적이 결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³⁹⁾.

셋째, 조례의 규율사항에 관해서는 대부분 ‘필요한 사항’ 이라고 규정하여 추상적으로 제정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경상남도)’,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울산시 북구)’, ‘부산광역시 남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부산시 남구) 등은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정의규정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39) 물론, 조례의 목적에 ‘인권증진’이나 ‘인권보호’라고만 규정한다고 해서 목적을 반드시 거기에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하면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전형을 말한다. 2.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라 함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와 시·군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도민”이란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도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구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주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주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주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구의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주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각 조례에는 조례의 내용에서 규정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예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인권, 주민에 대한 개념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조례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하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개념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유일하게 ‘인권’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의 개념⁴⁰⁾을 준용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풀어쓴 예(전라북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인권선언을 추가한 예(광주광역시⁴¹⁾) 등이 발견된다.

둘째, 조례의 보호대상인 ‘주민’의 개념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권기본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법」상 ‘주민’의 개념⁴²⁾을 확대하여 거주 목적의 체류자 및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 의해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정의규정에 ‘주민’의 개념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5조에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일부규정의 효력확장을 꾀하고 있다.

셋째, 일부 조례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인권약자’의 범위를 두는 경우가 있다(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이들 조례에서는 ‘인권약자’의 구체적인 예로써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

4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권의 정의규정에 세계인권선언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인권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상균, 앞의 논문, 428면 참조.

4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시적 열거로 보아야 하고 예시된 집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들 ‘인권약자’에 개념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⁴³⁾.

넷째, 마지막으로 일부 조례에서 ‘사업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조례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례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자체의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지자체의 소관업무를 다른 지자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아닌한, 설령 주민이 다른 지자체에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조례의 효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적용범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민과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외국인에게도 이 조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모두 정의 규정에서 ‘주민’을 『주민등록법』상의 국적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도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지사만 존재하면 당연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만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3)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인권약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제6조에서 규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으로 규정하여 일부 전북의 특징을 감안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증진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장의 책무에 관해서 조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한 노력의무와 관련시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⁴⁴⁾. 또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권보호

44) 다만,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인권 증진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증진, 침해예방, 관련시책 및 사업추진의무 외에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는 사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지 않는 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희석시킬 염려가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아도 그러하다.

둘째, 일부 조례에서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의 개념에는 고용인을 둔 작업장이외에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을 들고 있다. 그런데, 복지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감독권한이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은 지자체가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감독권한의 남용 및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스스로 인권위원회 또는 국가기관에 진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 인권기본조례에서 발견되는 지자체장의 책무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인 노력의무 또는 조치의무로 두고, 구체적인 의무에 관한 부분은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울산시 북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작성의무(제3항 참조)도 조례의 형식상 기본계획수립의 장에서 규정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④ 시/도민의 권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5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도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는 주민의 일반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의 규정⁴⁵⁾을 준용하여 ‘합

4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일반적 권리이외에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인권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등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태도는 조례의 목적 등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각 지자체에는 인권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별도로 주민의 권리에 관해서도 그 내용을 기술하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일부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등 일부 권리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입법태도는 침해에 관한 구제를 전제로, 그 구제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그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례가 인권의 정의규정 이외에 주민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기술한다면 이는 인증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기본조례의 제정목적과 합치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의 목적(제1조 참조)에는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 어디에도 구민의 책무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위에서 본바와 같은 구민의 권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례의 목적 및 성격에 비추어 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한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개별적 권리를 기술하는 입법태도는 법기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 되고⁴⁶⁾, 경우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는 경우 한정해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6) 반면에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되었거나 제정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규정 내에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⑤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책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4조(교육감의 책무) 시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과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남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장 등의 책무) 사업장과 각종 단체(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등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장의 책무 이외에 별도로 교육감, 사업장, 교육기관, 민단단체, 시민 등에게 노력의무 및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광주광역시의 피감기관이라는 점,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고, 시민이 단순히 인권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인권증진의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책무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47) 조상균, 앞의 논문 429면 참조.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및 북구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아닌 교육기관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교육기관이 학교를 말하는지, 아니면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모두 포함하는지 해석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정의규정 또는 당해 규정에서 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사업장 등’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미 ‘사업장’의 정의규정을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⑥ 기관 및 단체 지원 또는 협력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10조(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언론기관이 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존중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제18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보 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지원 조례」에 따른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력)의 설치, 기관 및 단체 지원 또는 협력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는 인력확충의 의무를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 지역차원에서 인권시책을 집행할 부서 및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있다.

둘째, 인권활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지원근거규정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지원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고,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교육기관, 언론기관(경상남도), 민간단체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셋째, 예산지원을 이들 조례에 근거하여 행하느냐, 아니면 지자체의 일반적인 보조금지급규정에 의해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만약 후자에 의할 경우에는 인권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인권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규정은 단지 확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지원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전자의 경우에는 보조금지원과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는 후자의 형태로,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는 전자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역사성 2.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 3.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 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 전략 5.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인권 증진 계획과 전략	제6조(인권 옹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옹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2.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3.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7. 시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8.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 달 방안 등 ③ 시장은 제1 항의 규정에 따 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 다 그 타당성 여 부를 전반적으 로 검토하여 이 를 정비 한다.				권 보호와 증진 에 관한 사항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자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 권 보호와 증진 에 관한 사항

인권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성패여부는 후술하는 심의기구의 활성화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각 조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은 조례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조례에서는 지자체 장에게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도지사는 ……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조례의 이행의무위반으로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계획 수립의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정책권한행사가 자의가 아닌 기본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권현안은 시기에 따라 그 내용 및 보장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작성주기를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5년 주기(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부산시 해운대구), 4년 주기(부산시 남구)를 규정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에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시 수영구 등은 작성주기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의 주기설정

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맞추어 4년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3년 혹은 5년이 좋은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계획수립의 과정, 비용,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설정하면 될 것을 보인다.

셋째,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인권증진에 대한 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인권약자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법 및 시책의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술하고 있고, 시민의 인권의식향상을 위한 시책(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북구) 등 몇 가지 독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구체적 인권보장대상을 구체화하는 경우(전라북도)도 발견 된다⁴⁸⁾. 다만, 전라북도가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권보장대상 속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적지향’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다.

⑧ 인권교육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12조(학습체계 구축)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의식을 고양하고 전파할 수 있는 평화도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제21조(인권교육 실시) 도지사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7조(인권교육 실시)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 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제6조(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증진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48) 전라북도의 경우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및 인권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권조례의 성과중 하나가 바로 인권교육에 관한 제도화이다. 인권교육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에서 인권교육의 정례화 등을 규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조례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처럼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은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학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인권교육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⁴⁹⁾.

또한 일부조례에서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 교육기관(부산광역시 남구)을 들고 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인권교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⑨ 공청회 등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9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제 15조(출석·발언의 요구, 공		제15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

49) 광주광역시 조례의 경우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은 제12조 이외에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장의 의무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교육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권 현황 및 인권 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청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시, 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자체 장이 인권정책 또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정당성 확보 및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조례에서는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임의규정으로 설계되어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이와 더불어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인권영향평가는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및 정책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⁵⁰⁾’를 말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기 판단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시정에게 권고 또는 강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조례에는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동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50) 조상균, 앞의 논문, 432-433면 참조.

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1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권옹호위원회의 설치 등) 도시사의 인권정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증진에 관한 도시사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 4. 인권센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도시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도시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2항 제2호의 인권약자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제9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	제9조(위원회)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	제8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 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 15조(출석·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시, 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는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명칭은 시민위원회(광주광역시), 인권옹호위원회(전라북도), 인권증진위원회(기타)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심의, 지자체장에 대한 자문 등의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관한 사항(광주광역시),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북구)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권센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및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이다. 인권센터에 지위 및 활동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후술하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⑪ 위원회의 구성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권단체에서 추천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인망이 높은 사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부지사,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도의회의원 2. 인권약자 권익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2명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구 본청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행정관리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북구 구민으로서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심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			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보장, 시민의 참여보장, 그리고 전문성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조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위원의 총인원은 13명(전라북도)⁵¹⁾, 20명(경상남도), 15명(기타 지자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둘째, 위원가운데 위원장은 부시장 혹은 부구청장이 담당하는 형태(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와 위원가운데 호선하는 형태(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북구)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부시장 혹은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결국 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 살펴보면, 포괄적 전제조건으로 인권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 북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자체는 일부 위원의 경우에만 인권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대비된다. 결국 후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까지도 훼손될

51) 조문에는 13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변화된 법률용어로 ‘명’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지가 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 있어 적어도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을 감안한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는 위원회 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의 조례는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참여보장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⑫ 위원장의 직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1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결위 또는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위원회의 대표로서의 위원장의 지위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결위 시 직무대행의 순위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⑬ 위원회의 임기 및 해임·해촉사유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17조(구성) ③ 위촉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들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	제12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
제19조(위원회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해임)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제14조(위원회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보장 및 해임·해촉사유를 규정하는 것은위원의 독립성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조례에서도 이를 위해서위원의 임기 및 해임·해촉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권독립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조례는위원의 임기를 2년 또는 3년(경상남도)으로 하는 등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는 등의위원의 독립성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경상남도를 제외한 각 조례는위원의 해임·해촉사유를 기재하여 임명·위촉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임·해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율하여 임명권자 또는위원장의 자의에 의한 해임·해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면,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위원회에 자주(장기간) 불참한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남구, 해운대구)’ 등이 그것이다. 즉 품위손상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그 판단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주(장기간)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판단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자체장이 공무원을위원으로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임명행위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일정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위촉행위가 된다. 따라서위원의 자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해임과 해촉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부조례에서 해촉 및 해임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⑭ 회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동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관련해서는 회의소집 요건이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일부 조례(광주광역시,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의 경우에 그 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기능은 다른 여타 위원회처럼 유명위원회의로 전락하고 말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⁵²⁾.

이점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위원회가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될 수 있는가와 정기회가 보장되어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위원회 소집요건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부산시 남구,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장만이 회의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

52)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시민위원회’가 2009년 12월 27일에 출범했지만, 시민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인권현안에 대해서 논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허창영, 앞의 논문, 34면 참조.

하더라도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북구), 위원 2분의 1의 동의를 있을 때(부산광역시 수영구)에도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현재 정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곳은 전라북도(연4회), 경상남도(연2회), 울산시 북구(연2회) 등 3곳이다. 일반적으로 정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곳에서 위원들의 소집요구에 의한 임시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에는 정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위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⑮ 분과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7조(구성) 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 둘 수 있다.	제13조(분과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일반적으로 각 조례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⑩ 간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2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정신선양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의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각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고, 일반적으로 인권업무담당자가 간사의 지위를 갖는다. 일부 조례에서는 간사의 업무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부산광역시 남구, 해운대구)

⑪ 수당 등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2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	제17조(실비보상, 운영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⑱ 비밀준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23조(비밀 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밀 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위원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⑬ 위원회 운영세칙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일부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의 경우에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세칙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으로 뒷부분에서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⑭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 조례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㉑ 부칙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수립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종합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 칙 <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8조가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1호, 2010.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부칙에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 등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모든 조례에서는 부칙을 두어 시행일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시한을 별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실제로 지자체장을 기속할 정도로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정과정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과는 클 수도 있다.

3) 각 지자체별 특수 조문비교

① 광주광역시

제7조(평화도시 선언) ① 시장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상공인단체, 학계, 언론계 등과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민주·인권·평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

의지가 포함된 평화도시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화도시 선언에는 인권 증진 및 평화애호의 이념과 목표, 세계화 비전(Vision)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시책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 한다.

1. 광주광역시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

제9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인권·평화센터 등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광주 인권·평화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인권존중 및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징공간의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조례명과 조례개정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용 속에 ‘인권존중’과 ‘도시육성’이 혼합된 관계로 곳곳에 종전 조례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평화도시의 선언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의 경우에는 제정의도가 의심스러운 규정으로 ‘인권헌장선언’으로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⁵³⁾. 또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9조(공청회)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원래의 의미의 인권영향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효율성이 의심스럽다.

② 전라북도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은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3) 평화도시선언의 제정의도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것으로 조상균, 앞의 논문, 421면 참조.

제20조(인권센터의 재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인권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인권센터장은 제2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권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조례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해 획기적인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인권센터설립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조례에는 5가지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도의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제3조). 그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권비용 공적부담의 원칙’이다. 이 문제는 누가 인권보장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물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인권증진에 관한 도민의 책무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의 문제는 주민대 주민의 관계에서도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으로 설령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조례에는 인권센터의 설립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전북조례의 인권센터는 제19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함’으로 설립이유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위원회의 관련사무보조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센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인권센터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위는 실질

적인 면에서 볼 때, 위원회의 지위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지자체장(도지사)의 시민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에 관련사무보조를 업무로 하는 센터를 두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경우에 따라서 센터를 설립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인권센터의 업무가운데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이 있다. 그런데 센터가 아무리 독립기구인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보조하는 기구라고 하지만, 도시자가 센터장을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권침해사례의 접수 및 상담활동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은 국가인권위의 지역사무소가 전라북도에도 없는 상황에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업무와 자칫 충돌할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에서 연결체계를 잘 수립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에 관한 움부즈만 제도를 설립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정리 및 시사점

위와 같은 한국의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제정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의 경우는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적극적인 제정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제정된 것이다. 물론 이후에 인권기본조례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이를 지자체에 제정을 권유하는 형태로 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지만, 이후에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라도 제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인권기본조례에는 공통적으로 지자체장의 책무에 관한 일반

규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권기본조례가 다른 행정조례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서 볼 때 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라든지,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든지, 게다가 인권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및 시책반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른 행정조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부 조례에서는 국가기관조차 시도하지 못하거나, 제정에 실패했던 다양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도입되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후에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국의 각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비교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조례명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제 / 개 정 일	2009.10.27	2010.7.9	2010.3.25	2011.1.10	2010.12.15	2011.1.10	2010.11.22
조문구조 / 수	제3장 24개 조문, 부칙	장구분× 24개 조문, 부칙	장구분× 2개 조문, 부칙	장구분× 18개 조문, 부칙	장구분× 2개 조문, 부칙	장구분× 20개 조문, 부칙	제4장 2개 조문, 부칙
실질적 목적	인권증진 및 세계적 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인권의 실질적 보장	인권의 실질적 보장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
정의 규정	*민주·인권·평화도시 *인권 *시민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	*인권 *인권정책 *공공기관	*인권 *인권약자 *도민 *사업장	*인권 *인권약자 *구민 *사업장	*인권 *인권약자 *구민 *사업장	*인권 *인권약자 *구민 *사업장	*인권 *인권약자 *구민 *사업장
기본원칙	×	1.인권 최대한 보장 의 원칙 2.인권 보편성 유지 의 원칙 3.인권 친화적 정책 의 원칙 4.도민 참여형 인권 실행의 원칙	×	×	×	×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5.인권 비용 공적부담의 원칙					
적용범위	×	×	×	×	외국인 적용	외국인 적용	×
단체장의 책무	○	○	○	○	○	○	○
주민의 권리	×	○	○	○	○	○	○
기타 책무	*교육감 *시민	×	×	×	*기업 *교육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주	*사업장 *각종 단체
지원 및 협력	○	×	○	○	○	○	○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기본계획 포함사항	1.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역사성 2.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3.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시민의 인권 증진	1.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2.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3.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	1.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4.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1.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4.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1.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1.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3.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5.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1.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3.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5.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74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계획과 전략 7.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8.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오한 사항			한 비움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그 밖에 인권 보호 와 증진에 관한 사항		한 비움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그 밖에 인권 보호 와 증진에 관한 사항
인 권 교 육	○	○	×	○	○	×	○
공 청 회	○	○	×	○	○	○	○
인 권 영 향 평 가	○	×	×	×	×	×	×
인 권 백 서 발 간	○	△ (실태조사 보고서)	×	×	×	×	×
위 원 회 설 치 명	인권 증진 및 민주· 인권·평화도시시민 위원회	전라북도인권옹호 위원회	경상남도 인권증진 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 권증진위원회	부 산 광역시 남구인 권증진위원회	부 산 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위원회	부 산 광역시 해운대 구인권증진위원회
위 원 회 설 치 시기	×	조례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	조례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
위 원 회 설 치 사 항	1.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1.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대한 조언 2.인권보장과 인권 옹 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따른 실천 과제 발굴 4.인권센터의 운용 에 관한 사항·심의·	1.제6조 제2항제2호 의 인권약자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 본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계획 의 실천과제 발굴 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지사 또 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제6조 제2항의 인 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계획 의 실천과제 발굴 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구청장 또 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제7조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구청장 또 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제7조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 한 사항 3.그 밖에 구청장 또 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제6조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및 기본 계획에 따른 시책 의 추진에 관한 사 항 2.사업장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구청장 또 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의결 5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 로 선정한 사항	사항				
위원회 구성인원	15명 이내	13명 이내	20명 이내	15명 이내	15명 이내	15명 이내	15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신	*위원장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의 자격	1.공무원 2.의회가 추천하 는 사람 3.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인권단체에서 추천 한 인권활동 경력 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지역사회 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이 있고 업무를 공 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자 중에서 도 지사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1.도의회가 추천을 받은 자 2.인권단체에서 인 권활동 경력이 있 는 자 3.학계 및 교육계에 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력이 있는 자	1.도의회의원 2.인권약자 권익 증 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그 밖에 인권약자 의 권익 증진에 관 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 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다만, 부구 청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장 은 당연직 위원에 된다. 1.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2명 2.인권단체에서 인	1.부산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 2.인권단체에서 인 권활동 경력이 있 는 사람 3.학계 및 교육계에 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력이 있는 사 람 4.국가기관 또는 법 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중 대한 사람 5.그 밖에 인권약자 의 권익증진에 관 한 학식과 경력이	1.부산광역시 수영 구의 의원 2.인권단체에서 인 권활동 경력이 있 는 사람 3.학계 및 교육계에 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력이 있는 사 람 4.국가기관 또는 법 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중 대한 사람 5.그 밖에 인권약자 의 권익증진에 관 한 학식과 경력이	1.부산광역시 해운 대구의 의원 2.인권단체에서 인 권활동 경력이 있 는 사람 3.학계 및 교육계에 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력이 있는 사 람 4.국가기관 또는 법 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중 대한 사람 5.그 밖에 인권약자 의 권익증진에 관 한 학식과 경력이

76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해운대구
		4.국가기관 또는 법 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중 시한 자 5.그 밖에 인권약자 의 권익증진에 관 한 학식과 경향이 풍부한 자		권활동 경력이 있 는 사람 3.학계 및 교육계에 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력이 있는 사 람 4.국가기관 또는 법 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중 시한 사람 5.북구 구민으로서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심이 풍 부한 사람으로 공 개모집하여 위촉 할 수도 있다.	공부한 사람	공부한 사람	공부한 사람
위원장소집 위원회 소집요건	위원장소집	*정기회: 연4회 *임시회: 도지사 또 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3분 의1이상의 요구	*정기회: 연2회 *임시회: 도지사 또 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3분 의1이상의 요구	*정기회: 연2회 *임시회: 구청장 또 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3분 의1이상의 요구	구청장의 요구가 있 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또는 재직위원 1/2 이상의 동의	구청장의 요구가 있 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구청장의 요구가 있 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본과위원회	○	○	○	○	○	○	○
간사규정	○	○	○	○	○	○	○
수당규정	○	○	○	○	○	○	○
비밀준수	○	○	○	○	○	○	○
위원회운영세칙	×	×	○	○	○	×	○



제 4 장

일본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1. 들어가며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는 ‘부락문제’ 또는 ‘동화문제⁵⁴⁾’라는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처(법률적 대처)가 미진한 점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발전되어 왔다⁵⁵⁾. 현재 일본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상황을 보면,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15개 부현에 16개의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⁵⁶⁾.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까지 계산하면 전체 1804개 시정촌 가운데 410개 시정촌에, 410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⁵⁷⁾.

〈표 2〉 일본의 광역 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

도도부현	조례명	시행일
토치기현(栃木縣)	토치기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3.4.1
후쿠이현(福井縣)	후쿠이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3.4.1
미에현(三重縣)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를 만드는 조례	1997.10.1
시가현(滋賀縣)	시가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1.4.1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1998.11.1
	오사카부 부락차별에 관한 조사 등 규제 등에 관한 조례	1985.10.1
나라현(奈良縣)	나라현 모든 차별의 철폐 및 인권존중에 관한 조례	1997.3.27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와카야마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2.4.1
돗토리현(鳥取縣)	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6.8.1
도쿠시마현(徳島縣)	도쿠시마현 부락차별 발생방지에 관한 조례	1997.4.1

54) 일본의 ‘부락문제’는 부락출신자에 대한 신분적 편견에 따른 차별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말하고, 정부 공식적인 행정용어로는 ‘동화문제’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友永健三, 『日本における部落解放運動と差別撤廃に向けた法整備』, 『인권법평론』 제6호, 2010년, 4-5면 참조.

55) 일본의 인권조례의 제정과정 및 내용에 관한 국내문헌으로 조상균, 『일본의 인권기본조례 현황과 내용-부락차별철폐조례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 2010년.

56) 일본의 인권기본조례 상황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함. <<http://blhri.org/kenkyu/data/jourei/jourei.htm>> 일부분헌에서는 16개 도도부현에 17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1개는 발견하지 못했다.

57) 友永健三, 앞의 논문,

도도부현	조례명	시행일
카가와현(香川縣)	카가와현 부락차별 발생방지에 관한 조례	1996.7.1
에히메현(愛媛縣)	에히메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1.4.1
고치현(高知縣)	고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1998.4.1
후쿠오카현(福岡縣)	후쿠오카현 부락차별 발생방지에 관한 조례	1995.10.20
사가현(佐賀縣)	사가현 인권존중에 관한 조례	1998.4.1
구마모토현(熊本縣)	구마모토현 부락차별 발생방지 및 조사규제에 관한 조례	1995.3.16
합계	16조례	

이러한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는 내용별로 나누어 첫째 ‘부락차별철폐 인권옹호에 관한 조례형’, 둘째 ‘부락차별철폐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형’, 셋째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형’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들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세 번째 유형인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형’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조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10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지자체별 인권조례 비교

1) 전체적인 형식 및 체계

① 조례의 명칭

도도부현	조례명	시행일
토치기현(栃木縣)	토치기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3.4.1
후쿠이현(福井縣)	후쿠이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3.4.1
미에현(三重縣)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를 만드는 조례	1997.10.1
시가현(滋賀縣)	시가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1.4.1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1998.11.1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와카야마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2.4.1

도도부현	조례명	시행일
돗토리현(鳥取縣)	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6.8.1
에히메현(愛媛縣)	에히메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2001.4.1
고치현(高知縣)	고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1998.4.1
사가현(佐賀縣)	사가현 인권존중에 관한 조례	1998.4.1

일본의 인권조례 가운데 인권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유형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이다.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이러한 유형을 띠고 있는 것은 10여개 지자체에서 발견되고, 미에현(三重縣), 사가현(佐賀縣)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로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다.

② 조례의 구성

도도부현	조례의 구성
토치기현(栃木縣)	전문, 6개 조문, 부칙
후쿠이현(福井縣)	전문, 8개 조문, 부칙
미에현(三重縣)	전문, 7개 조문, 부칙
시가현(滋賀縣)	전문, 7개 조문, 부칙
오사카부(大阪府)	전문, 4개 조문, 부칙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전문, 7개 조문, 부칙
돗토리현(鳥取縣)	전문, 7개 조문, 부칙
에히메현(愛媛縣)	전문, 8개 조문, 부칙
고치현(高知縣)	전문, 7개 조문, 부칙
사가현(佐賀縣)	전문, 5개 조문, 부칙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는 한국의 인권기본조례와 달리 모두 전문을 두고 있고, 별도의 장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20개에서 24개 조문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최소 4개에서 최대 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각 조례의 내용 비교

① 전문

도도부현	전문 내용
토치기현(栃木縣)	인권은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고유의 권리이다. 인권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일본헌법하에서 인종, 신앙, 성별, 사회적신분, 가문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 기타의 인권침해 없이, 모든 인간들이 인권을 향유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각각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요구할 수 있는 평화롭고 풍족한 사회의 실현은 현민 모두의 염원이다. 또한 우리 고향인 토치기현이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조화로운 평화롭고 풍족한 지역사회로써, 이후에도 활력있는 발전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도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권리의 행사에 수반한 책임을 자각하고, 인권을 상호존중하고, 인권의 공존을 도모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여기에 우리들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어, 인권의 공존이 도모되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후쿠이현(福井縣)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개인의 존중과 함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의 존중을 정하고 있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하는 바이다. 이 이념하에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상호의 존엄을 인식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보다 풍족한 고향과 후쿠시마켄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염원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동화문제를 비롯한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게다가 국제화,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진전에 수반하여 새롭게 대처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여기에 우리들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미에현(三重縣)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고,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기본적인 권의 향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국헌법의 이념하에 우리들 미에현민은 인권선언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시가현(滋賀縣)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 및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즉 우리들 각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고, 사회적신분,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연령, 질병 등에 의해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고, 개인으로서 존중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각자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각자가 갖는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우리들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즈음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서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 및 미래세대에 걸쳐, 풍족한 자연에 둘러싸여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가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자 책무이다. 우리들 시가현민은 21세기 초두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도도부현	전문 내용
오사카부(大阪府)	모든 인간이 고유의 존엄을 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국헌법이 이념으로 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념을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는 오늘날도 사회적 신분,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장애가 있는 것 등에 기인하는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에 관한 제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존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도리를 보다 한층 자각해야 한다는 과제도 존재하고 있다. 인권존중의 기운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오사카가 세계도시로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존중과 인간의 존엄을 인식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이야말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가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와카야마현(和歌山縣)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이 이념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 이념하에 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인권침해와 부당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다. 동시에 우리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인권의 존중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에 서서, 우리들은 현재 및 장래의 주민이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화가 뿌리내린 평화롭고 밝은 사회의 풍족함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에 우리들은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와카야마현에서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돗토리현(鳥取縣)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 및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기본적 인권의 향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자 법 아래의 평등 및 기본적 인권을 정한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 이념하에서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들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풍족한 자연에 둘러 싸여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던 고향인 돗토리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명을 달성하는 것을 결의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에히메현(愛媛縣)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써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있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신분, 가문, 신앙, 성별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 기타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의 국제화, 정보화 및 고령화의 진전 등에 수반하여 인권에 관한 다양한 과제도 생기고 있다. 모든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평등과 참가의 지역사회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고치현(高知縣)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이 이념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일본국헌법에서도 법 아래

도도부현	전문의 내용
	의 평등 및 기본적인권의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이념하에서 모든 인간이 각각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람을 소중하게 하고, 소중하게 존중받는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다. 그러나 현실사회에서는 동화문제를 비롯한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HIV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화문제에 대해서는 고치현에서도 행정의 책무로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태가 있다. 현은 이들 문제의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우리들은 힘을 합하여 모든 인권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들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차별 없는,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사가현(佐賀縣)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태어났을 때부터 향유하고 있다. 이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것이고, 인권의 존중은 인류보편의 원리로서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 숭고한 이념하에 차별과 편견 없는 상호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일본의 도도부현의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는 예외 없이 전문을 두고 있다⁵⁸⁾. 조례의 전문은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조례의 해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전문은 조례제정의 배경 및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방향성, 조례제정주체의 결의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고,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전문에는 인권보장의 원칙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이 고유의 존엄을 가지고, 평등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원리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례의 전문은 이러한 인권보장의 원칙이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헌법의 이념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권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차원을 벗어나 전 세계, 국가차원에서 그 현상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각 조례에는 인권문제를 인류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권문제에는 각 지자체의 특징을 감안하여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토치기현(인종,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등), 후쿠이현(동

58) 일본의 시정촌 가운데, 土佐清水市(토사사미즈시), 紀の川市(키노카와시) 같은 곳은 조례의 전문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자체의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의 대부분이 전문을 두고 있다.

화문제를 비롯한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시가현(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연령, 질병 등), 오사카부(사회적 신분,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장애), 와카야마현(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성별 등), 에히메현(사회적 신분, 가문, 신앙, 성별 등), 고치현(동화문제를 비롯한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HIV감염자, 외국인 등) 등을 들어 현재 일본사회 또는 지자체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 대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넷째, 전문에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 및 인권존중의 방향성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마도 조례명 자체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라는 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구성원의 책임이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다섯째, 전문에는 조례의 제정주체의 결의를 기술하면서 전문을 마치고 있다. 즉, ‘여기에 우리들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형태로 기술하여 ‘우리들은’이라는 제정주체를 기술하고, 이들 제정주체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결의의 징표로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② 목적

도도부현	조례의 목적
토치기현(栃木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현민의 인권이 존중되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롭고 풍족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9) 전문에서 인권의 구체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문속에 구체적 인권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미에현의 경우에는 제1조 목적에서 동화문제,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을 언급하고 있다.

도도부현	조례의 목적
후쿠이현(福井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현민 및 사업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인권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존중의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에현(三重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에 관하여 현 및 현내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현민 등'이라 한다.)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시책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동화문제,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 대책을 추진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고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가현(滋賀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현민 및 사업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사카부(大阪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부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부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및 인권옹호에 이바지 하는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추진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고, 이것에 기인한 인권시책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돗토리현(鳥取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에 관하여, 현, 시정촌 및 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가 해야 할 책무를 정하는 것에 의해, 동화문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 장애인인권에 관한 문제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 시책을 추진하고, 차별이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히메현(愛媛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치현(高知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대하여, 현, 시정촌 및 현민(현내에 거주하는 개인 및 현내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 및 법인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동화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권에 관한 문제의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밝은 사회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가현(佐賀縣)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의 존중에 대하여, 현, 시정촌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화문제 및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조례는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각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이들 조례는 각 주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는 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시책추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조항에는 책무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시정촌) 및 현민의 책무에 관하여 기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업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후쿠이현, 미에현, 시가현, 고치현), 또는 지방자치단체(부)의 책무만을 규정하는 경우(오사카부)도 발견된다.

둘째, 일본의 인권기본조례에서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조항내부에서 일부 개념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치현과 같은 경우 현민을 ‘현내에 거주하는 개인 및 현내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 및 법인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일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개념을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더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부 인권문제를 목적조항에서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대로 일부 조례에서는 전문에서 인권문제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조례에서는 목적조항에서 인권문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에현(동화문제,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돗토리현(동화문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 장애인인권), 사가현(동화문제 및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등의 조례에는 조문에 구체적 인권문제를 두는 대신에 목적조항에서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다.

③ 주체의 책무

도도부현	각 주체의 책무
토치기현(栃木縣)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갖는다. ② 현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데 국가 및 시정촌과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현민의 책무) ① 현민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현민은 가정, 지역, 학교, 직역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이념에 대한 이해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스스로 노력함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도도부현	각 주체의 책무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현과 시정촌과의 협력) 현 및 시정촌은 각각 실시하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후쿠이현(福井縣)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③ 현은 인권시책을 추진하는데 국가, 시정, 현민 및 사업주와 협력한다. 제3조(현민 및 사업주의 책무) 현민 및 사업주는 인권에 대하여 이해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 지역, 학교, 직역 기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모든 사람의 인권의 존중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시정촌과의 협동) 현은 인권시책에 대해서 시정촌과 정보의 교환 등 연대하여 시정촌과 협동하여 인권존중의 사회의 실현에 노력한다.
미에현(三重縣)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시점에 서서 추진함과 동시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을 추진하는데, 국가 시정촌 및 관련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현민 등의 책무) ① 현민 등은 스스로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현민 등은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한다.
시가현(滋賀縣)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기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의 추진에 국가 및 시정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정에 노력한다. 제3조(현민 및 사업주의 책무) 현민 및 사업주는 스스로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가정, 지역, 학교, 직역 기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오사카부(大阪府)	제2조(부의 책무) ① 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실시하는데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인권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부는 인권시책의 추진에 국가 및 시정촌과의 연락조정을 긴밀히 함과 동시에, 시정촌, 사업주 및 부민과의 협동에 의해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제2조(현의 책무등)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기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의 추진에 국가 및 시정촌과 연대한다. ③ 현은 시정촌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조인 기타의 지원을 행한다. ④ 현은 인권시책의 추진에 인권에 관한 실태파악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제3조(현민의 책무) 현민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자각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가정,

도도부현	각 주체의 책무
	지역, 학교, 직역 기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돗토리현(鳥取縣)	제2조(현의 책무) ①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현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에 배려하고, 인권존중의 사회적 환경만들기와 인권의식의 양성 및 고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을 추진하는데 국가, 시정촌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현은 시정촌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기타의 지원을 행한다. 제3조(시정촌의 책무) 시정촌은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행정분야에서 인권존중에 배려하고, 인권의식의 양성 및 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의 책무) 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는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에히메현(愛媛縣)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및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갖는다. ② 현은 인권시책을 실시하는데 국가, 시정촌 및 관련단체와 연대하고, 협력한다. 제3조(현민의 책무) 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치현(高知縣)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환경만들기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권의식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② 지사는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내에 인권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③ 지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3조(시정촌의 책무) 시정촌은 스스로의 행정분야에서 인권존중에 배려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시책에 노력한다. 제4조(현민의 책무) 현민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 또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시책에 노력한다.
사가현(佐賀縣)	제2조(현의 책무) 현은 인권존중에 관한 현민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국가 및 시정촌과 협력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노력한다. 제3조(시정촌의 책무) 시정촌은 인권존중에 관한 주민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현과 협력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노력한다. 제4조(현민의 책무) 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각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 현민 등의 책무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현’의 책무에 관해서는 ‘인권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 및 시정촌과의 협력의무’를, ‘현민’에 대해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현 및 시정촌의 인권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조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현에 대하여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공표의무(와카야마현, 고치현)’를 규정하고 있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필요한 지도 및 조언(고치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을 떠나서 과연 지사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조례가 ‘현’의 책무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고치현의 경우에는 ‘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④ 인권시책(기본방침)

도도부현	인권시책에 관한 내용
토치기현(栃木縣)	제5조(시책의 기본방침) ① 시책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1.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방향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인권에 관한 과제마다의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4. 전3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중요사항 ③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토치기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후쿠이현(福井縣)	제5조(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할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전3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⑥ 지사는 기본방침에 기인한 인권시책의 실시상황에 대해서 매년도 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인권시책에 관한 내용
미에현(三重縣)	제5조(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시책의 기본으로 되는 방침(이하, '인권시책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인권시책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인권존중의 기본이념 2. 인권에 관한 의식의 고양에 관한 사항 3. 동화문제, 아동, 여성,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의 시책에 관한 사항 4. 전 각호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사는 인권시책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다음조 제1항의 미에현 인권시책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인권시책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시가현(滋賀縣)	제4조(인권시책 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으로 되는 방침(이하 '인권시책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인권시책기본방침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의 기본이념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권문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사는 인권시책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시가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④ 지사는 인권시책 기본방침을 정할 때는 이것을 공표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은 인권시책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지사는 인권시책기본방침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에 대해서 매년도, 시가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에 보고한다. 제5조(인권시책 기본방침과의 정합) 현은 현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책의 책정 및 실시는 인권시책 기본방침과의 정합에 노력한다.
오사카부(大阪府)	제3조(기본방침의 책정) ① 지사는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본방침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전항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변경할 때는 사전에 오사카부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자문한 후에 그 답신을 첨부하여 부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사는 전항의 의견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제4조(인권시책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으로 되는 방침(이하, '인권시책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인권시책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기본이념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권문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사는 인권시책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와카야마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도부현	인권시책에 관한 내용
돗토리현(鳥取縣)	제5조(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시책의 기본으로 되어야할 방침(이하, '인권시책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인권시책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인권존중의 기본이념 2. 인권에 관한 의식의 고양에 관한 사항 3. 차별실태의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상담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5. 전3항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동화문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 장애인인권에 관한 문제 등 인권문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7. 전 각호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히메현(愛媛縣)	제5조(기본방침의 책정)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한다. ② 지사는 전항의 기본방침을 책정하는데 사전에 에히메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고치현(高知縣)	제5조(인권시책의 기본방침) 지사는 동화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현민이 자주적으로 노력하도록 의식고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정촌 및 현민의 시책을 한층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권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한다.
사가현(佐賀縣)	제5조(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존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지사는 전항의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시정촌,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본방침 또는 기본시책의 책정을 지사에 대하여 의무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시책의 내용,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책을 정하는 절차 등에 지자체별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시책이란, '부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및 '인권옹호에 이바지 하는 시책'을 말하고⁶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원칙하에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인권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시책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에 설명하는 인권시책에 포함되어야 사항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사가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권존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어, 조문만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인권시책에는 '인권옹호에 이바지

60) 오사카부 조례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시책'의 정의를 참조했지만, 대부분의 조례도 이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시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시책에는 인권존중의 기본이념,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분야별 인권문제에 관한 사항, 기타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그 외에 인권시책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담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사가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또한 조례에서는 인권시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후술하는 자문·심의기구로서 위치하는 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오사카부는 사전에 지사의 부속기관으로써 설치하는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그 답신을 첨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사는 의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기본방침을 책정·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인권시책은 이후의 인권시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심의기관

도도부현	심의 기관
토치기현(栃木縣)	제6조(토치기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 ① 전조 제3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토치기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위원 25명 이내에서 조직한다. ④ 위원은 학식경험을 가진 자, 현의회의 의원, 시정촌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⑦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후쿠이현(福井縣)	제6조(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 등을 하기위하여 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을 둔다.

61) 다만, 후쿠이현, 오사카부, 에히메현, 고치현, 사가현의 경우에는 시책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

도도부현	심의 기관
	제7조(심의회의 소관사무) 심의회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무를 소관한다. 1. 기본방침의 책정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고, 지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사항 2. 기본방침에 기인한 인권시책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사항 3. 전3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회의 조직 등) ① 심의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궐위한 경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회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⑤ 회장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궐위할 때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심의회에 물어 정한다.
미에현(三重縣)	제6조(미에현 인권시책심의회의 설치) ① 인권시책 기본방침 기타 인권시책에 대해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미에현 인권시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인권시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조직 등) ① 심의회는 위원 20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남녀 위원의 수는 한성이 위원총수의 10분의 4 미만으로 되서는 안 된다. 다만, 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⑥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정한다.
시가현(滋賀縣)	제6조(시가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3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부속기관으로서 시가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인권시책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 이외에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심의한다. ③ 심의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조직 등) ① 심의회는 위원 18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및 현민으로부터 공모한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에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재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⑤ 위원은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그 직을 면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⑥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도부현	심의 기관
오사카부(大阪府)	제4조(심의회의의 자문등) ① 심의회는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심의회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제5조(와카야마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의 설치 등) ① 와카야마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인권시책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에 심의하는 것 이외에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회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의 조직 등) ① 심의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돗토리현(鳥取縣)	제6조(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협의회) ① 인권시책기본방침 기타 인권시책에 현내에 살고있는 모든 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8조의4 제3항에 따라, 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사는 인권시책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③ 협의회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① 협의회는 위원 26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⑤ 전 각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히메현(愛媛縣)	제6조(에히메현 인권시책추진협의회) ① 인권시책에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에히메현 인권시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① 협의회는 위원 15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운데 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전3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정한다.
고치현(高知縣)	제6조(고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협의회) ①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고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사는 전조의 인권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도도부현	심의 기관
	③ 협의회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가현(佐賀縣)	관련규정 없음.

각 지자체에서는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심 의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⁶²⁾. 이들 기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시책에 관하여 지사 의 자문에 응하는 소극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 기구로 이해된 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하와 같다.

첫째, 위원회의 위원수는 작게는 후쿠이현의 10명에서 돗토리현의 26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미에현의 경우에는 위원의 성비의 균형을 강조 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성이 위원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학식경험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 는 경우도 있지만(토치기현, 후쿠이현 등), 대부분이 전문성을 강조하여 ‘인권 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갖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가현의 경우에는 주민 으로부터 공모한 자를 위원의 자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모든 조례가 2년으로 하고 있고, 보결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하고 있다. 또한 재임이 보장된다.

넷째, 또한 오사카부의 경우에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가 주민에게 공개되어 그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 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후쿠이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회장이 심의회에 물어 정한다.’고 규정하여 심의회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62) 사가현의 경우에는 인권시책을 정하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시정촌, 관계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제5조 참조).

⑥ 기타

도도부현	기타
토치기현(栃木縣)	
후쿠이현(福井縣)	
미에현(三重縣)	
시가현(滋賀縣)	
오사카부(大阪府)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제7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돗토리현(鳥取縣)	
에히메현(愛媛縣)	제8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정한다.
고치현(高知縣)	제7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가현(佐賀縣)	

조례에서는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사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의 날 제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들도 있다(新居浜市; 니이하마시).

3. 정리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는 각 주체의 책무, 인권시책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로서 위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인권기본조례와 비교되는 점을 가지고 있고, 이들 특성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 전문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문을 통하여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조례제정의 배경, 방향성, 결의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전문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조례의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조례에 전문을 두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많은 조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책의 추진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 점을 반증하고 있다.

둘째, 조문의 내용면에서도 세계인권선언 등을 명기하여 조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점은 인권의 보편성원칙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셋째, 조문의 수가 매우 짧다. 우리나라의 인권기본조례가 20개 조문을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문의 수가 비교적 짧게 설계되어 있다. 결국 많은 수의 조문을 두는 것만이 조례의 실효성 및 구속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조례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규율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조문의 내용 속에 정의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점 또한 우리나라에 모든 인권기본조례가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점에 관해서는 일부 조례에서 정의규정이 아닌, 다른 조문 속에 주요개념에 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다섯째, 인권보장의 대상 및 인권문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물론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지자체의 정확한 현상인식이 전제되어 주요과제를 내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일본의 경우 인권시책에 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주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및 ‘주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 하는 시책’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조례의 경우에는 ‘주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계몽’만을 인권시책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자체의 의지, 제정주체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인권교육에 우선 집중하는 인권조례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일본의 각 지자체 인권조례 비교표

	토치기현 (栃木県)	후쿠이현 (福井県)	미에현 (三重県)	시가현 (滋賀県)	오사카부 (大阪府)	와카야마현 (和歌山県)	돗토리현 (鳥取県)	에히메현 (愛媛県)	고치현 (高知県)	사가현 (佐賀県)
조례명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를 만드는 조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인권존중에 관한 조례
시행일	2003.4.1	2003.4.1	1997.10.1	2001.4.1	1998.11.1	2002.4.1	2006.8.1	2001.4.1	1998.4.1	1998.4.1
조문구 조수	전문, 6개조문, 부칙	전문, 8개 조문, 부칙	전문, 7개 조문, 부칙	전문, 7개 조문, 부칙	전문, 4개 조문, 부칙	전문, 7개 조문, 부칙	전문, 7개 조문, 부칙	전문, 8개 조문, 부칙	전문, 7개 조문, 부칙	전문, 5개 조문, 부칙
전문	인권보장의 원칙, 조례제정의 배경 및 인권존중의 사회 만들기의 방향성, 조례제정 주체의 결의 등									
실질적 목적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목적 조항의 특이 사항	현(시장촌)및 현민의 책무 규정, 사업주의 책무 규정(후쿠이현, 미에현, 시가현, 고치현, 지방자치단체(부)의 책무만 규정(오사카부))									
지자체 의 책무	x	x	사회적 약자 인권문제 구체화	x	x	x	사회적 약자 인권문제 구체화	x	현민에 대한 정의 포함	사회적 약자 인권문제 구체화
	○	○	○	○	○	○	○	○	○	○
주민의 책무	인권인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현 및 시정촌의 인권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									
	○	○	○	○	○	○	○	○	○	○
기타 책무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사의 책무 규정	

	토치기현 (栃木県)	후쿠이현 (福井県)	미에현 (三重県)	시가현 (滋賀県)	오사카부 (大阪府)	와카야마현 (和歌山県)	돗토리현 (鳥取県)	에히메현 (愛媛県)	고치현 (高知県)	사가현 (佐賀県)
						공표의무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공표의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필요한 지도 및 조언	
인권 시책	○	○	○	○	○	○	○	○	○	○
인권 시책 내용	1.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방향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인권에 관한 과제마다의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4. 전3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중	* 구체적인 포함 사항 규정 없음	1. 인권존중의 기본이념 2. 인권에 관한 의식의 고양에 관한 사항 3. 동화문제, 아동, 여성,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의 시책에 관한 사항 4. 전각호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인권시책 외을 추진하기를	1.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의 기본이념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권문제 본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포함 사항 규정 없음	1.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기본이념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권문제 본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인권존중의 기본이념 2. 인권에 관한 의식의 고양에 관한 사항 3. 차별실태의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상담지원제에 관한 사항 5. 전3항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포함 사항 규정 없음	*구체적인 포함 사항 규정 없음	*구체적인 포함 사항 규정 없음

	토치기현 (栃本県)	후쿠이현 (福井県)	미에현 (三重県)	시가현 (滋賀県)	오사카부 (大阪府)	와카야마현 (和歌山県)	돗토리현 (鳥取県)	에히메현 (愛媛県)	고치현 (高知県)	사가현 (佐賀県)
	오사하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동화문제, 여 성인권 관련 문제,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 등 인권 문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7. 전 각호에서 열거한 것 이 외에 인권시책 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기관명	토치기현 인권시책추진 심의회	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 심의회	미에현 인권시책심의 회의 설치	시가현 인권시책추진 심의회	심의회의	와카야마현 인권시책추진 심의회의	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협의회	에히메현 인권시책추진 협의회	고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협의회	*관련 규정 없음
심의 사항	*지사가 기본 방향을 정할 때 의견 *인권 존중의 사회만들기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 심의 *인권 존중의 사회만들기	1. 기본방침의 책정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고, 지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사항 2. 기본방침에 기인한 인권시 책의 실시상황 에 관하여 조	*인권시책 기 본방침 기타 인권시책에 대해서 조사 심의 *인권시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 에게 의견 진술	*인권시책기 본방침에 관 한 사항을 조 사심의 *인권이 존중 되는 사회만 들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심의 *인권이 존중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하 여 지사의 자 문에 응하고, 의견 진술	*인권시책기 본방침에 관 한 사항에 심의 *인권 존중의 사회만들기 에 관한 기본 적 사항 심의 *인권 존중의 사회만들기	*인권시책기 본방침 기타 인권시책에 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 의 의견 반영 *인권시책기 본방침을 정 하는데 사전 에 의견 제시	*인권시책에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 여 지사에게 의견 진술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하 여 필요에 따 라 중요사항 을 조사심의 *인권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 전 의견 제시 *인권 존중의	

	토치기현 (栃木県)	후쿠이현 (福井県)	미에현 (三重県)	시가현 (滋賀県)	오사카부 (大阪府)	와카야마현 (和歌山県)	돗토리현 (鳥取県)	에히메현 (愛媛県)	고치현 (高知県)	사가현 (佐賀県)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시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사항 을 진술	사심의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사항 3. 전3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정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되는 사회만 들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시에게 의견 진술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시에게 의견 진술	* 인권 존중의 사회 만 들기 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지 시에 게 의견 진술		사회 만 들기 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지 시에 게 의견 진술	
규칙 위임	×	×	×	×	×	○	×	○	○	×



제 5 장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

1.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방향

1) 자치입법권 강화

사실 종래의 표준조례안의 경우 위임조례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표준조례안에 의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위임조례라고 할 수 없는 인권기본조례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지자체의 특성 및 역량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은 공란으로 제시하거나, 조문식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⁶³⁾ 조례 제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설을 덧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기여한다.

2) 내용의 개방성

기본 표준조례안이 획일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대개 이를 일종의 참고자료가 아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조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과 임의사항을 구분하거나, 복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개발한다.

3) 인권의 최대한 보장

인권기본조례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조례제정의 경험 및 일본의 사례를 종합하여 필수적인 내용이외에도 조례제정과정에서 언제든지 지자체의 상황 및 시민사회의 역량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원칙으로 개발한다.

63) 표준조례안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조문형식으로 된 표준조례 대신 개조식으로 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입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현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조문식으로 개발한다. 김철, 「표준조례제도의 법정정책학적 분석」,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책학회, 2008년, 137면 참조.

4) 조례의 이념과 실효성 조화

많은 표준조례안이 명목상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지 않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임의규정만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들은 결국 조례의 본질 및 의의를 상실시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은 제정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조례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조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필수사항에 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기타부분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개발한다.

5) 인권적인 법문화형성

인권기본조례를 조례의 대상이자 주체인 지역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한글화원칙에 따라 조문을 개발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인권적인 법문화형성에 기여 한다.

2.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

1) 조례명

① 조례명

○○시(도,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 전라북도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 울산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부산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 부산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③ 해설

- 조례명에는 조례의 목적이 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례명을 ‘○○시 인권기본조례’라고 규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조례의 성격이 개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포괄적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조례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일부 조례의 경우 ‘인권 증진’만 조례명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자칫 인권의 개선적 의미로만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보장되고 있는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권 보장’의 개념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목적

① 조문의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군,구) 주민(시민, 구민,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
권존중,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
탕으로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상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울산시 북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시 남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시 수영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조문 해설

- 조례의 목적규정에는 조례의 제정이유 및 조례의 규율사항이 포함된다.
- 조례가 위임조례인 경우 상위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권기본조례는 상위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 조례의 제정이유에 관해서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 포함되도록 한다.

- 조례의 규율사항에 관해서는 특별히 강조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도 무방하다.
- 경우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조문에서 사용해야 한다.

3) 정의

① 조문의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A안: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1. B안: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시민,도민,구민)”이란 ○○시(도,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도,군,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 광주광역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2.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말한다.

※ 전라북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라 함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나 시·군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 경상남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도민”이란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도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울산시 북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구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

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부산시 남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부산시 수영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주지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구의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

③ 조문 해설

- 정의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정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이다.
- 인권기본조례의 정의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인권’ 과 ‘주민(시민, 도민, 구민)’을 들 수 있다.
- ‘인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준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그 의미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그대로 풀어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주민’의 개념에 관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인권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주민’의 개념상 외국인 등은 국적에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주민’에 개념에 포함되고,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체류를 목적으로 한 ‘주민’의 개념에 포섭된다.

- 다만, 기타 개념(예를 들면 사업장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 조례의 인적·장소적 효력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조문의 내용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도,군,구)는 주민의 인권(및 복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건강가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문 해설

- 이 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 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다.
- 그러므로 기본조례의 내용을 참조하여 다른 조례들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기본조례의 내용에 위반되는 다른 조례의 내용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기본조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례를 입안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자는 나름대로 정당한 입법정책이라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실제로 지자체에서 주민의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시 인권의 범주에 포함된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복지’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5)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

① 조문의 내용

A안: 제4조(시장의 의무) 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시사, 구청장, 군수)은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B안: 제4조(시장의 의무) 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시사, 구청장, 군수)은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증진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 경상남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

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울산시 북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 부산시 남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

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산시 수영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조문 해설

- 인권기본조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무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의무의 내용에 관해서는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경우(B안), 좀 더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A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A안과 같이 정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좀더 특화시킬 부분이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은(실태조사, 보고서작성 등) 조례의 형식상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 일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권 침해 시 조치의무’규정은 어떠한 경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인권침해사례를 인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문화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기본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교육청도 광역자치단체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서 별도로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주민의 협력

① 조문의 내용

제5조(주민의 협력) 시민(도민, 구민,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도, 구, 군)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부산시 남구

제6조(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남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산시 수영구

제6조(기관·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5조(사업장 등의 책무) 사업장과 각종 단체(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등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문 해설

-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은 단순히 지자체의 역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의 시책에 협력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노력에 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 주민의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 조례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주민의 협력 이외에 기관, 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7)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조문의 내용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방향)
2. 주민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역사성
2.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3.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 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인권 증진 계획과 전략
 7.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8.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등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비 한다.

제9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 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제6조(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권옹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2.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상남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울산시 북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부산시 남구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

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부산시 수영구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

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3.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문 해설

- 인권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기본계획을 설정할 근거를 둔다.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는 그 주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예시된 내용을 참고로 각자의 특성에 맞

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문에 두기보다는 기본계획안에 두는 것이 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8) 인권지수 개발

① 조문의 내용

제7조(인권지수 개발)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도,구,군)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인권지수를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개정안)	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
제10조(인권지수의 개발·시행)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 국제인권	지수를 연구·개발하고 시책을
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 차	추진하여야 한다.

③ 조문 해설

- 인권지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달가능한 일정한 목표치를 의미하고,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인권의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 인권지수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기본계획과 대비된다.
- 인권지수의 개발책임 및 지수관리는 시의 인권담당부서나 인권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인권 교육

① 조문의 내용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전향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12조(학습체계 구축)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의식을 고양하고 전파할 수 있는 평화도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전라북도

제21조(인권교육 실시) 도지사는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및 인권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울산시 북구

제7조(인권교육 실시)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

시설 등의 종사자

※ 부산시 남구

제6조(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20조(인권증진 교육) ① 구청장

은 소속 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문 해설

- 인권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자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인권교육의무자의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로 한정할 수 있고, 그 직원의 범위를 ‘지자체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음으로 가능한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 또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인권교육체계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체계마련의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

10) 인권센터의 설치

① 조문의 내용

제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 군, 구)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13조(인권·평화센터 등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광주 인권·평화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은 해마다 전년도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센터의 재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인권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인권센터장은 제2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권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조문 해설

-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구(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근거규정을 둔다.
- 센터는 그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으로 조문의 제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성격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 또한 센터의 위상을 지자체장의 실무집행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문 및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실무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와의 관계, 공무원 파견가능성, 센터의 업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몇 가지 선택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실무집행형 센터: 이 경우 센터는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의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에 관한 집행부서 및 아이디어뱅크로 존재할 수 있고, 주 업무로 시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기본계획의 안을 수립하거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인권시책에 관한 홍보업무 등 전반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지자체내부에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의 중복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성발전재단’ 등과 같은 별도의 독립재단으로 설립하여 지자체의 외각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은 당연히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 나. 심의위원회의 실무기관형 센터: 이 경우 센터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주 업무로 시정책의 홍보업무나 기본계획수립 등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지만, 독자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상담활동 등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지위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상이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고, 지자체장의 전폭적인 의지가 없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함께 짚을 수밖에 없다.
- 센터장이나 직원에 관한 명확히 규정을 둘 수도 있으나, 이후 재단법인(공익법인)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여 센터장의 지위 및 선임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칙에서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조문의 내용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도, 군, 구)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①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

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제10조(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언론기관이 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존중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울산시 북구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산시 남구

제2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

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 부산시 수영구

제18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

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1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조문 해설

-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제1항은 지자체장이 이 조례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다.
- 또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관련 단체 등이 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의 내용에 관한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위원회의 설치

① 조문의 내용

제11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도시사, 구청장,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1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라북도

제7조(인권옹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의 인권정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

- 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
 4. 인권센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 경상남도

제7조(위원회의 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제2호의 인권약자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울산시 북구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약자

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산시 남구

제9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남구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산시 수영구

제9조(위원회)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산시 해운대구

제8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문 해설

- 조례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는 시장으로부터 독립한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또한 지자체에 따라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위원회의 구성

① 조문의 내용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전문성을 갖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권단체에서 추천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전라북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자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경상남도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부지사,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도의회의원
2. 인권약자 권익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울산시 북구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2명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

한 사람

5. 북구 구민으로서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심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부산시 남구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구 본청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부산시 수영구

-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각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

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부산시 해운대구

-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행정관리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조문 해설

- 위원회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위원 가운데 호선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다.
-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식’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전문성을 갖는’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가 제한됨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보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고(2년 또는 3년), 중도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적합하다.

14) 위원회의 운영

① 조문의 내용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연 4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도지사, 구청장,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라북도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경상남도

-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울산시 복구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산시 남구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산시 수영구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동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조문 해설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본 표준안에는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자문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자치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를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정기회를 두는 경우 단순히 연○회라고 기술하기 보다는 ‘분기별’ 또는 ○월○일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위원회의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일반정족수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하고, 다만, 별도의 특수한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가중정족수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소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 기타 위원의 비밀준수의무나 회의공개 등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근거가 있는 이상 별도의 규정으로 두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다.

15) 위원회의 간사

① 조문의 내용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2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정신선양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의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전라북도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경상남도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울산시 북구

제10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부산시 남구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

한 보좌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부산시 수영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③ 조문 해설 - 위원회 간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다. - 간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인권관련 담당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일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민간인인 위원장이 직접 공무원에게 업무에 관하여 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사의 업무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인권영향평가

① 조문의 내용

제15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 등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9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

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문 해설

- 인권영향평가는 원래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때 제시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독립적인 기구가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인권영향평가라 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구속할 수 없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간접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7) 위원 수당 등

① 조문의 내용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2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제17조(실비보상, 운영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울산시 북구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산시 남구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산시 수영구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문 해설

- 조례에 참석수당 및 여비관련 근거규정을 둔다.
- 지자체에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관련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명을 기술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시행규칙

① 조문의 내용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울산시 북구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전라북도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상남도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 부산시 수영구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조문 해설

- 시행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근거규정을 둔다.

19) 부칙

① 조문의 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시행일부터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련 조문의 예시

※ 광주광역시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수립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종합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전라북도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시 북구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8조가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부산시 남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시 수영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조문 해설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시행일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과 일정한 기일이후를 시행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 현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이 작성되었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표준안으로 개정된 경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경과조치를 둔다.
- 종래 지자체 장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내용으로 위원회구성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다.



제 6 장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도,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군,구) 주민(시민, 구민,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A안: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1. B안: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시민,도민,구민)”이란 ○○시(도,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도,군,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과 주민 이외의 개념을 설정하는 경우에(예를 들면 사업장 등) 조례의 인적·장소적 효력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도,군,구)는 주민의 인권(및 복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기본조례의 내용에 위반되는 다른 조례의 내용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기본조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례를 입안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자는 나름대로 정당한 입법정책이라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제4조(시장의 의무) A안: 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은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B안: 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은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의무가운데 ‘인권 침해 시 조치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인권침해사례를 인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문화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기본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5조(주민의 협력) 시민(도민, 구민,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도, 구, 군)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도지사, 구청장, 군수)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방향)
2. 주민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도지사, 구청장, 군수)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는 그 주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제7조(인권지수 개발)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도,구,군)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인권지수를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전향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인권교육의무자의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로 한정할 수 있고, 그 직원의 범위를 ‘지자체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음으로 가능한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 제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군,구)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근거를 둔다. 센터의 위상과 지위에 관해서는 해설집을 참조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여 구성, 역할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도, 군, 구)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 제11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도지사, 구청장,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은 위원회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전문성을 갖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위원가운데 호선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연 4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도지사, 구청장,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서 요구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 표준안에는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자문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자치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를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정기회를 두는 경우 단순히 연○회라고 기술하기 보다는 ‘분기별’ 또는 ○월○일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는 가중정족수를 둘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간사를 민간인 위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권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하기보다는 단순히 조례에서 직위를 바로 부여한다.

- 제15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 등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권영향평가가 규정되었다 하여 시장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속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정치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조문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시행일부터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6년.
- 김선옥, 「옴부즈만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판례의 문제」, 『행정판례연구』 제4집, 1999년.
- 김철, 「표준조례제도의 법정정책학적 분석」,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책학회, 2008년.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년.
- 류지태 외, 『지방자치 조례·규칙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연구』 제19호, 2007년.
- 박영철, 「울산 인권조례운동을 시작하다」,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패러다임의 진화-』, 2011년.
- , 「풀뿌리 인권운동으로서의 조례제정운동의 경험과 과제」, 『지자체 조례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활동가워크숍 자료집』, 2008년.
-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2004년.
- 방승주, 「헌법 제10조」, 『헌법 주석서 I』, 법제처, 2010년.
- 성낙인, 『헌법학』, 2002년.
- 안진,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1년.
-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0년.
- 오진환, 「조례의 무효와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행정판례연구』 III, 1996년.
- 이기동, 「진주시 인권조례제정 과정과 시사점」,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패러다임의 진화-』, 2011년.
- 이기우/ 하승수, 『지방자치법』, 2007년.
- 이상돈, 『인권법』, 2010년.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1년.
- 전준형, 「전라북도 인권조례제정 이후의 동향과 전망」,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패러다임의 진화-』, 2011년.
-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09년.
- ,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인권법평론』 제2호, 2008년.
- , 「일본의 인권기본조례 현황과 내용-부락차별철폐조례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 2010년.
- ,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부산광역시의 소수자·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2009년.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2008년.

천병태, 『지방자치법』, 1996년.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1호, 2006년.

허창영,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운동의 동향과 전망」, 『2011 인권조례 정책워크숍: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패러다임의 진화-』, 2011년.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년.

홍준형, 「옴부즈만조례의 위법 여부」, 『판례행정법』, 1999년.

塩野 宏, 『行政法 III』, 2006년.

友永健三, 「日本における部落解放運動と差別撤廃に向けた法整備」, 『인권법평론』 제6호, 2010년.



부 록

<부록 1>

한국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제정) 2007-05-15 조례 제 3491호

(전부개정) 2009-11-16 조례 제 37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전형을 말한다.
2.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증진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시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과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 증진 및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역사성
2.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3.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 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인권 증진 계획과 전략
7.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8.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비 한다.

제2장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제7조(평화도시 선언) ① 시장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상공인단체, 학계, 언론계 등과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민주·인권·평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지가 포함된 평화도시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화도시 선언에는 인권 증진 및 평화애호의 이념과 목표, 세계화 비전(Vision)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시책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 한다.

1. 광주광역시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9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 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학습체계 구축)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의식을 고양하고 전파할 수 있는 평화도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제13조(인권·평화센터 등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광주 인권·평화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인권존중 및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징공간의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장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권단체에서 추천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
- ③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정신선양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의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 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 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수립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종합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 칙 <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제정) 2010-03-25 조례 제 34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도민”이란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도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도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

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언론기관이 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존중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 제2호의 인권약자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부지사,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도의회의원
2. 인권약자 권익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 3.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7-09 조례 제 34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라 함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와 시·군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제6조(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권옹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2.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인권옹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의 인권정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자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
4. 인권센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결위 또는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분과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5조(출석·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도, 시, 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17조(실비보상, 운영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 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은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센터의 재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교육 실시) 도지사는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및 인권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인권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인권센터장은 제2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권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1.10 조례 제 5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울산광역시 복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구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인권교육 실시)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2명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북구 주민으로서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심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의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5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8조가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제정) 2010.12.15 조례 제 6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기관·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3.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동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제정 2010.11.22 조례 제9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구의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

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 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장 등의 책무) 사업장과 각종 단체(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등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증진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인권증진위원회

제8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행정관리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증진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951호, 2010.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제정(2011. 5. 6. 조례 제09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민과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남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남구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구 본청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일본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토치기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시행일) 2003년 4월 1일

<전문>

인권은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고유의 권리이다. 인권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일본헌법하에서 인종,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 기타의 인권침해 없이, 모든 인간들이 인권을 향유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각각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요구할 수 있는 평화롭고 풍족한 사회의 실현은 현민 모두의 염원이다. 또한 우리 고향인 토치기현이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조화로운 평화롭고 풍족한 지역 사회로써, 이후에도 활력있는 발전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도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권리의 행사에 수반한 책임을 자각하고, 인권을 상호존중하고, 인권의 공존을 도모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여기에 우리들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어, 인권의 공존이 도모되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현민의 인권이 존중되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롭고 풍족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질할 책무를 갖는다.

② 현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데 국가 및 시정촌과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현민의 책무) ① 현민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현민은 가정, 지역, 학교, 직역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이념에 대한 이해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스스로 노력함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현과 시정촌과의 협력) 현 및 시정촌은 각각 실시하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5조(시책의 기본방침) ① 시책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1.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방향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인권에 관한 과제마다의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4. 전3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중요사항
- ③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토치기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조(토치기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 ① 전조 제3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토치기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심의회는 위원 25명 이내에서 조직한다.
- ④ 위원은 학식경험을 가진 자, 현의회의 의원, 시정촌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 ⑦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후쿠이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시행일) 2003년 4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개인의 존중과 함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의 존중을 정하고 있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하는 바이다. 이 이념하에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상호의 존엄을 인식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보다 풍족한 고향과 후쿠시마켄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염원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동화문제를 비롯한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게다가 국제화,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진전에 수반하여 새롭게 대처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여기에 우리들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현민 및 사업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시책(이하‘인권시책’이라 한다.)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인권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존중의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③ 현은 인권시책을 추진하는데 국가, 시정, 현민 및 사업주와 협력한다.

제3조(현민 및 사업주의 책무) 현민 및 사업주는 인권에 대하여 이해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 지역, 학교, 직역 기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모든 사람의 인권의 존중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시정촌과의 협동) 현은 인권시책에 대해서 시정촌과 정보의 교환 등 연대하여 시정촌과 협동하여 인권존중의 사회의 실현에 노력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전3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⑥ 지사는 기본방침에 기인한 인권시책의 실시상황에 대해서 매년도 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 등을 하기위하여 후쿠이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을 둔다.

제7조(심의회의 소관사무) 심의회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무를 소관한다.

1. 기본방침의 책정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고, 지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사항
2. 기본방침에 기인한 인권시책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사항
3. 전3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회 조직 등) ① 심의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궐위한 경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회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⑤ 회장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궐위할 때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심의회에 물어 정한다.

인권이 존중되는 미예를 만드는 조례

(시행일) 1997년 10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고,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기본적인권의 향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국헌법의 이념하에 우리들 미예현민은 인권선언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에 관하여 현 및 현내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현민 등’이라 한다.)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시책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동화문제,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 대책을 추진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고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정의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시점에 서서 추진함과 동시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을 추진하는데, 국가 시정촌 및 관련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현민 등의 책무) ① 현민 등은 스스로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현민 등은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시책의 기본으로 되는 방침(이하, ‘인권시책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인권시책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인권존중의 기본이념
 2. 인권에 관한 의식의 고양에 관한 사항
 3. 동화문제, 아동, 여성,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의 시책에 관한 사항
 4. 전 각항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사는 인권시책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다음 조 제1항의 미에현 인권시책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 ④ 전항의 규정은 인권시책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조(미에현 인권시책심의회의 설치) ① 인권시책 기본방침 기타 인권시책에 대해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미에현 인권시책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인권시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조직 등) ① 심의회는 위원 20명 이내로 조직한다.

- ②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남녀 위원의 수는 한성이 위원총수의 10분의 4 미만으로 되서는 안 된다. 다만, 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 ⑥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정한다.

시가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시행일) 2001년 4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 및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즉 우리들 각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고, 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연령, 질병 등에 의해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고, 개인으로서 존중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각자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각자가 갖는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우리들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즈음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서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 및 장래세대에 걸쳐, 풍족한 자연에 둘러싸여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가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자 책무이다.

우리들 시가현민은 21세기 초두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현민 및 사업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기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의 추진에 국가 및 시정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정에 노력한다.

제3조(현민 및 사업주의 책무) 현민 및 사업주는 스스로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가정, 지역, 학교, 직역 기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시책 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으로 되는 방침(이하 ‘인권시책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인권시책기본방침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의 기본이념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권문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사는 인권시책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시가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④ 지사는 인권시책 기본방침을 정할 때는 이것을 공포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은 인권시책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지사는 인권시책기본방침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에 대해서 매년도, 시가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에 보고한다.

제5조(인권시책 기본방침과의 정합) 현은 현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책의 책정 및 실시는 인권시책 기본방침과의 정합에 노력한다.

제6조(시가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3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부속기관으로서 시가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인권시책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 이외에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심의한다.
 ③ 심의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의 조직 등) ① 심의회는 위원 18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및 현민으로부터 공모한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에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재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⑤ 위원은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면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⑥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오사카부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시행일) 1998년 11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이 고유의 존엄을 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국헌법이 이념으로 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념을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는 오늘날도 사회적 신분,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장애가 있는 것 등에 기인하는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에 관한 제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존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도리를 보다 한층 자각해야 한다는 과제도 존재하고 있다. 인권존중의 기운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오사카가 세계도시로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존중과 인간의 존엄을 인식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이야말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가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부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부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및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추진의 기본으로 되는 사항을 정하고, 이것에 기인한 인권시책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의 책무) ① 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실시하는데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인권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부는 인권시책의 추진에 국가 및 시정촌과의 연락조정을 긴밀히 함과 동시에, 시정촌, 사업주 및 부민과의 협동에 의해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

제3조(기본방침의 책정) ① 지사는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본방침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전항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변경할 때는 사전에 오사카부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자문한 후에 그 답신을 첨부하여 부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사는 전항의 의견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 자문 등) ① 심의회는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와카야마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시행일) 2002년 4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이 이념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 이념하에 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인권침해와 부당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다. 동시에 우리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인권의 존중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에 서서, 우리들은 현재 및 장래의 주민이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화가 뿌리내린 평화롭고 밝은 사회의 풍족함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에 우리들은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와카야마현에서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등)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기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의 추진에 국가 및 시정촌과 연대한다.

③ 현은 시정촌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기타의 지원을 행한다.

④ 현은 인권시책의 추진에 인권에 관한 실태파악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제3조(현민의 책무) 현민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가 인권존중의 사회 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자각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가정, 지역, 학교, 직역 기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시책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으로 되는 방침(이하, ‘인권시책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인권시책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기본이념
2.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권문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사는 인권시책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와카야마현 인권시책추진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와카야마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 와카야마현 인권시책추진 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인권시책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에 심의하는 것 이외에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회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조직 등) ① 심의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시행일) 2006년 8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 및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기본적 인권의 향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자 법 아래의 평등 및 기본적 인권을 정한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 이념하에서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들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풍족한 자연에 둘러싸여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던 고향인 돗토리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명을 달성하는 것을 결의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에 관하여, 현, 시정촌 및 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가 해야 할 책무를 정하는 것에 의해, 동화문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 장애인인권에 관한 문제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 시책을 추진하고, 차별이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 ①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에 배려하고, 인권존중의 사회적 환경만들기와 인권의식의 양성 및 고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현은 인권시책을 추진하는데 국가, 시정촌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현은 시정촌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기타의 지원을 행한다.

제3조(시정촌의 책무) 시정촌은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행정분야에서 인권존중에 배려하고, 인권의식의 양성 및 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의 책무) 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는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가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시책의 기본으로 되어야할 방침(이하, ‘인권시책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인권시책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인권존중의 기본이념
2. 인권에 관한 의식의 고양에 관한 사항
3. 차별실태의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상담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5. 전3항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한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동화문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 장애인인권에 관한 문제 등 인권문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7. 전 각항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협의회) ① 인권시책기본방침 기타 인권시책에 현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8조의4 제3항에 따라, 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사는 인권시책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③ 협의회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① 협의회는 위원 26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⑤ 전 각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히메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시행일) 2001년 4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써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있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신분, 가문, 신앙, 성별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 기타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의 국제화, 정보화 및 고령화의 진전 등에 수반하여 인권에 관한 다양한 과제도 생기고 있다. 모든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평등과 참가의 지역사회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하여, 현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및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갖는다.
② 현은 인권시책을 실시하는데 국가, 시정촌 및 관련단체와 연대하고, 협력한다.

제3조(현민의 책무) 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의 책정) ① 지사는 인권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한다.

② 지사는 전항의 기본방침을 책정하는데 사전에 에히메현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제6조(에히메현 인권시책추진협의회) ① 인권시책에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에히메현 인권시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① 협의회는 위원 15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운데 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전3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정한다.

제8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정한다.

고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

(시행일) 1998년 4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이 이념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일본국헌법에서도 법 아래의 평등 및 기본적인권의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이념하에서 모든 인간이 각각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람을 소중하게 하고, 소중하게 존중받는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다. 그러나 현실사회에서는 동화문제를 비롯한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HIV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화문제에 대해서는 고치현에서도 행정의 책무로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태가 있다. 현은 이들 문제의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우리들은 힘을 합하여 모든 인권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들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차별 없는,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대하여, 현, 시정촌 및 현민(현내에 거주하는 개인 및 현내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 및 법인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동화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권에 관한 문제의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밝은 사회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 ① 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환경만들기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권의식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② 지사는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내에 인권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 ③ 지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3조(시정촌의 책무) 시정촌은 스스로의 행정분야에서 인권존중에 배려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시책에 노력한다.

제4조(현민의 책무) 현민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가 인권존중의 사회 만들기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 또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시책에 노력한다.

제5조(인권시책의 기본방침) 지사는 동화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현민이 자주적으로 노력하도록 의식고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정촌 및 현민의 시책을 한층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권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한다.

제6조(고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협의회) ① 인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고치현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사는 전조의 인권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 ③ 협의회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가현 인권존중에 관한 조례

(시행일) 1998년 4월 1일

<전문>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향유하고 있다. 이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것이고, 인권의 존중은 인류보편의 원리로써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 숭고한 이념하에 차별과 편견 없는 상호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의 존중에 대하여, 현, 시정촌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화문제 및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의 책무) 현은 인권존중에 관한 현민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국가 및 시정촌과 협력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의 실시 노력한다.

제3조(시정촌의 책무) 시정촌은 인권존중에 관한 주민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현과 협력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의 실시 노력한다.

제4조(현민의 책무) 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의식의 고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 지사는 인권존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시책을 실시

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지사는 전항의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시정촌,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

인 쇄 일 : 2011년 11월 15일

발 행 일 : 2011년 11월 30일

발 행 인 : **현 병 철**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전 화 : 인권정책과 02) 2125-9750

팩 스 : 02) 2125-9733

홈페이지 : <http://www.humnarights.go.kr>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 쇄 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